



# 설비인들 위한 알기쉬운 녹색인증 ①

자료제공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① 녹색기술인증 (이번호)
- ② 녹색사업인증 및 녹색기업인증

- ③ 녹색인증 대상
- ④ 녹색인증 지원혜택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 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 녹색기술인증

## I. 녹색기술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 ● 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 인증대상

10대 분야, 85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전략품목 및 핵심 요소기술 선정

\* 10대 분야 :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선박,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규격 제시(최고기술 대비 70% 수준)

### ● 인증기준

평가기관은 기술우수성, 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 신청기술의 기술 수준 - 기술 목표의 구체성/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은 운영요령에 명시된 기술수준 충족 필수
- 신청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 II. 녹색기술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1. 절차 및 제출서류

#### ● 녹색인증 평가는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서류평가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제출된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 1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에서 신청기술·사업 설명서의 사실여부에 대해 현장검증 실시
-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인증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평가
- 평가가 완료된 건은 심의위원회 상정

#### ● 녹색기술·인증 신청 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녹색기술 신청서 및 기술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해당 시] 소유권(지식재산권) 실시권 첨부서류 (△소유권 :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반도체설계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증, 실용신안 등 △실시권 : 기술이전계약서, 실시권 허여 내용 및 증빙자료 등)
- [해당 시] 성능시험검사서

## 2. 녹색기술 인증평가 기준

### ● 녹색기술 인증평가는 기술우수성과 녹색성으로 나누어 평가

- 평가기준 : 기술우수성, 녹색성 2개 평가항목, 5개 세부지표
- 판정기준 :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 신청기술이 '녹색기술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부적합 처리

구분	녹색기술
평가기준	- 기술우수성(60점) - 녹색성(40점)
평가항목	- 기술우수성(4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술의 기술수준(20점)</li> <li>• 기술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10점)</li> <li>•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점)</li> </ul>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20점) - 녹색성(1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40점)</li> </ul>

### ● 서류평가

#### 1) 기술우수성(60점)

##### ① 신청기술의 기술수준(20점)

- 평가 항목 : 신청한 기술이 운영요령에 명시된 기술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 ② 기술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10점)

- 평가 항목 : △(기술목표의 구체성) 신청기술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설정이 제시되었는지,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
- △(기술의 명확성) 신청기술 설명서에서 기술명칭, 개요, 특징이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는 항목

##### ③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점)

- 평가 항목 : △(기술의 혁신성) 기존 또는 유사기술대비 신청기술의 수준, 성능 등 경쟁 우위 요인 평가
- △(기술의 차별성) 신청기술이 기존 또는 유사기술대비 차별화되는 핵심요인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기술의 권리성) 신청기술에 대한 등록권(특허 등록권, 디자인등록증, 반도체 설계 등록 등) 및 실시권(기술이전계약서, 실시권 허여 계약서 등)에 대한 권리 확보 여부 평가

##### ④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20점)

- 신청기술을 활용한 향후 사업화 계획이나 신청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존재하고 있는지 판단
- 평가 항목 :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관련 시장의 진입 및 실현가능성을 파악하고, 사업화 계획(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기술적 파급효과) 신청기술이 타 기술분야 또는 유사 기술에 파생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 2) 녹색성(40점)

-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지 파악
- 평가 항목 : 녹색성은 다음 두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 ①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

- 신청기술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자원 재 활용(폐기물 발생 개선, 폐기물재활용 등)에 대해 정량화하여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

##### ② 녹색성장 기여도

- 신청기술이 녹색성장에의 기여도(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온실가스 감

출, 청정생산, 청정에너지, 친환경)에 대해 정량화하여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

● 현장평가

1) 녹색기술 관련 현장 체크리스트

- 신청자가 신청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신청자 준비사항
  - 신청기술(기술설명서)에 대한 발표자료 준비
  - 기술적 검증자료(원본) 준비
- 선행기술조사서
- 소유권(지적재산권 등) 또는 실시권에 관한 계약서
- 시험성적서, 기술인증서, 기업인증서
  - 녹색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준비
  - 국내외 시장조사 자료 등의 정확한 증빙
  - 녹색성의 정량적 자료 제시에 따른 근거 내용자료

2)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현장 체크리스트

- 신청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기반 및 제품생산 여부 확인
- 신청자 준비사항
  - 제조공정·제품생산과정 자료준비 및 질의 : △제조 공장 시설명세서 및 재고관련 인증서 △제조공정도 및 QC 관련 자료 등 △제조공정기술이 아닌 경우 등 영상, 사진, 설계도면, 논문 등 증빙
  - 사업성 관련 증빙자료 준비 : △구매의향서 또는 공급 계약서, 조달공급내역서 등 △기타 MOU 및 LO(Letter of Intent, 의향서)등의 증빙서류
  -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통한 매출 발생 여부 근거 자료 준비

3) 기타 확인사항

- 타 기관 인증서류 등 기타 증빙 서류 확인
- 신청자 준비사항
  - 이노비즈, 신기술·제품 인증, 벤처인증 등 타 기관 인증서류 준비
  - 녹색기술인증 평가에 필요한 기타 제반 서류 준비

III. 녹색기술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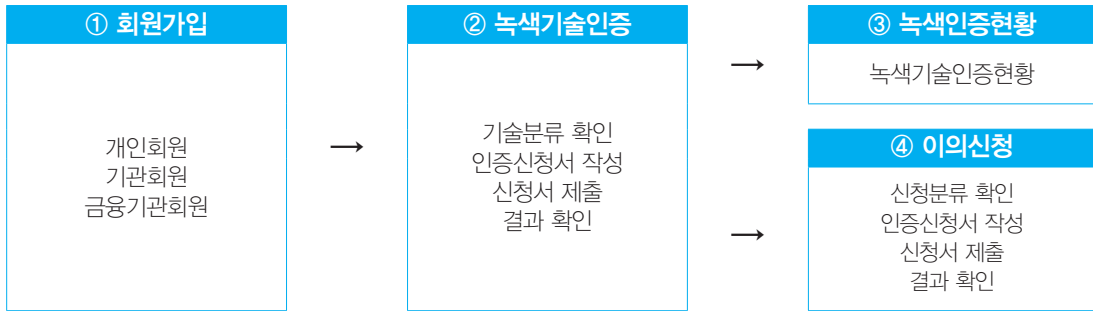
녹색기술인증센터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서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다.



**녹색기술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AT-11-00273		처리기간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신규 <input type="radio"/> 연장		45일	
<b>기관명</b>	대표자				
<b>주성산품</b>	업종				
<b>적용수</b>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b>기관유형</b>	<input type="radio"/> 대기업 <input checked=""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벤처, 이노비즈 <input checked=""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국,공립 연구기관 <input type="radio"/> 정부출연 (연)				
	<input type="radio"/> 대학 <input type="radio"/> 개인사업자 <input type="radio"/> 기타				
<b>주소</b>	650-807 경남 창원시 경명동 1405-10 (9층)			<b>사업자등록번호</b>	
<b>소속</b>	기술사업부	<b>직위</b>		<b>성명</b>	
<b>전화</b>	052-889-9876 (010-345-2580)	<b>팩스</b>		<b>이메일</b>	
<b>기술명칭</b>	녹색기술 인증 신청 by				
<b>기술분류</b>	2. 대분류    탄소저감 중분류    CCS 소분류    연소후 CO2 포집 플랜트		*분류번호 (code)		
<b>기술 키워드</b>	신장기술에 관한 키워드(Key Word)를 3개 이상 기재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키워드4: 키워드5				
<b>희망 평가기관</b>	신청한 기술 분야의 소관 행정기관이 복수이고 희망평가기관이 소속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경우에 희망평가기관에 의뢰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교육과학기술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녹색인증 운영요령」 제24조에 따라 위의 기술을 녹색기술로 인증받으려 하신다고 합니다.					
2011년 08월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신청자 (인)
<b>구비서류</b>	1. 신청 기술 설명서 1점 2. 사업지투표용서본 1점 3. 법인등기부 등본 1점 4. 소유권 또는 실시권에 관한 증명 5. 지식재산권 현황에 관한 증명 (해당하는 경우) 6. 외부기관의 사할 인증에 관한 증명 (해당하는 경우) 1점				수수료 1,000,000원

## 2. 인증 과정



## 3. 녹색기술 인증 신청서 작성 가이드

신청자	기관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공식 사항 기재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생산업/업종	
	기관유형	
실무책임자	- 해당 기관에서 녹색인증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관련사항 표기 ※ 녹색인증사무국 및 평가기관 심사 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 등의 사유발생 시 신청기관에 연락 가능한 실무 책임자	
신청기술	기술명칭	- 신청기술 명칭은 신청기술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 용어만 표기 - 명칭에 외국어나 특정 상표명, 개발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은 쓰지 않아야 함 - 명칭이 긴 경우 명칭을 함축한 약자로 명기 가능 ※ 향후 타 신청기술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기술의 핵심적 요인을 용어로 표기 ※ 평가 불가능한 '세계최초기술', '국내외최고기술' 등의 기술명칭은 표기하지 않음  (잘못된 기술명칭 변경 사례) 1. [변경 전] IP기반 복합센서를 활용한 WiFi, 3G, RF 유무선망을 활용한 LED 조명, 디밍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 [변경 후] 지하주차장용 LED 무선원격 디밍제어 기술 2. [변경 전] PC 전력절감 기술 → [변경 후] 중앙집중 제어 방식의 PC 전력절감 기술
	기술분야	- 대·중·소분류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참조
	기술키워드	- 신청 기술에 관한 키워드(Key Word)를 3개 이상 기재
	희망평가기관	※ 신청한 기술 분야의 소관 행정기관이 복수이고 희망 평가기관이 소속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경우에 희망 평가기관에 의뢰함

## 4. 녹색기술 인증 신청기술서 작성 가이드

### 1) 신청 기술의 개요

#### ① 신청 기술의 명칭 및 개요, 특징

- 명칭 : 제시된 핵심요소기술의 명칭과 부합되며, 제품명이 아닌 기술 자체의 명칭을 기재할 것(신청 기술의 명칭은 신청자와 협의 하에 인증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음)
- 특징 : 신청 기술의 우수성·장점 기재. 특히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재

#### ② 신청 기술의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요약

- 개발 기간 및 세부 개발 단계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기술
- 서술형 또는 표를 활용하여 작성

### 2) 신청 기술의 기술우수성

#### ① 신청 기술의 수명 주기상 위치

-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또는 쇠퇴기를 표시하여 단계별 기술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
- 그래프, 표 활용

#### ②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및 신청 기술의 우수성

- 기존 또는 유사 기술 대비 차별성 및 기술의 우수성을 비교하여 신청기술의 특징 기술
- 그래프, 표 활용

#### ③ 국내외 최고기술 대비 신청 기술의 수준(정량화하여 기술)

- 국내외 최고기술 대비 신청기술의 기술수준을 데이터를 근거로 정량적으로 기술(기존기술과의 정량적인 수치 비교 혹은 비교자료 등 제시)

#### ④ 핵심요소기술의 내용(항목별로 정량화하여 기술)

- 핵심요소 기술의 기술성에 대해 서술
- 요구하는 기술수준 만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기술(기술수준 부합도)
- 필요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공인시험성적서 등)

#### ⑤ 신청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시장진입 등 향후 사업화 계획

- ※ 제품 개발 또는 시장진입 등 사업화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사업화 진행과정 등 기술
- 사업화 실적 혹은 향후 계획을 계량적으로 제시
- 제품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기술

#### ⑥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등)

- ※ 비교대상 기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3) 신청 기술의 녹색성

- 신청 기술의 에너지와 자원 절약 효과 또는 신청 기술의 녹색성장예의 기여도(기후변화 및 환경 훼손의 억제 등)

### 4) 신청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에 관한 사항

#### ① 신청 기술을 직접 개발한 경우 그 개발형태(자체개발인지 공동개발인지의 여부)와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공동개발인 경우)

- ※ 신청자에게 소유권 또는 실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 ② 신청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수 또는 실시권 허여를 받은 주요내용

- ※ 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
- 예) 소유권 증빙자료 : 특허증, 디자인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증, 실용신안 등
- 예) 실시권 증빙자료 : 기술이전 계약서, 실시권 허용 내용 및 증빙자료 등

### 5) 신청 기술 적용 제품(해당하는 경우)

- 신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형태, 특징 등을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삽입
-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 기술의 반영 등을 설계도(설치도), 직접적인 제품의 실물사진을 포함하여 기술

### 6)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 ①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 기재

- \* 특허라면 특허번호 / 출원이라든 출원번호로 기재
- \*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으로 특허권자 혹은 등록

- 권자가 확인되어야 함
- 공동개발 또는 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특허권자 혹은 등록권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계약서(또는 협약서) 필수로 첨부되어야 함
- 개인명으로 특허/ 출원 등록된 경우, 대표자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과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가 있어야 함
- 소유권을 보유하나, 법인명이 바뀌었을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등)

②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타인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주요 내용, 현재 상황, 향후 전망 등 기술

7) 외부기관의 시험·인증 등(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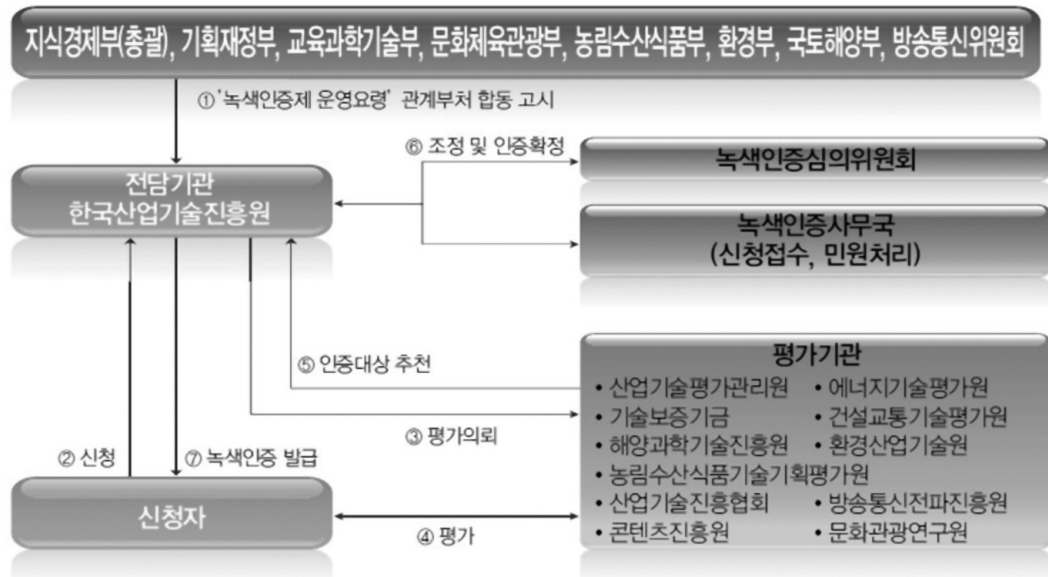
\* 해당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할 경우 확인이 보다 용이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와 목록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야 함  
\* 제출된 증빙자료가 페이지 이상인 경우 전 페이지 제출

①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 기술  
※해당 증빙서류 첨부

②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

③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받았거나 받아야 할 인·허가사항 및 현황



〈녹색인증 추진체계〉